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
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'06년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(舊)에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할 때 군사·경찰 옴부즈만¹⁾이 설치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수사²⁾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·심의·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,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보류되어 동일한 유형의 검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은 단순 이송·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

나. 이에 따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‘소위원회 업무 분장 사항’에 ‘검찰’을 추가하여 검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1) 당시 소위원회 업무를 세분화한 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‘영내거주장병’ 및 ‘경찰기관’만 추가

2) “수사절차·행태에 관한 사항”으로 권리 불고지·결과통지 불이행, 고의적 수사지연, 불친절, 폭언 또는 욕설, 무례행위 등 위압·강압 수사 등

※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민원은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검찰에 이송하여 검찰의 독립성 존중

제17조에 ‘검찰’을 추가(안 제17조)

※ “경찰기관” → “검찰 및 경찰기관”, “경찰관련” → “검찰 · 경찰관련”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(별 첨)

대통령령 제 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5호 중 “경찰기관”을 “검찰 및 경찰기관”으로, “경찰관련”
을 “검찰·경찰관련”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소위원회) ① 법 제20조제 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(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 다)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. 1. ~ 4. (생 략) 5. <u>경찰기관</u> (해양경찰기관을 포 함한다)의 처분·수사 등 <u>경</u> <u>찰</u> <u>관</u> <u>련</u> 분야의 고충민원 ② ~ ④ (생 략)	제17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검찰 및 경찰기관</u> ----- ----- <u>검</u> <u>찰</u> · <u>경찰</u> <u>관</u> <u>련</u>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